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33

발의연월일: 2025. 2. 6.

발 의 자:양부남 • 권향엽 • 김한규

김현정 • 민형배 • 이개호

이광희 • 전진숙 • 조계원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의 장을 임면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 일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국회 차원에서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의 장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보자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심의·의결한 임원 후보자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는 해당 임원 후보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 나 공기업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 유를 적시한 문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공기업의 장 후보자 의결에 대한 재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영위원

회가 의결하는 임원 후보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 개 정 안 |
|---------------------|---|-----------------------|
|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 1 |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 ~ ⑥ (생 략) | | ~ ⑥ (현행과 같음) |
| <u> <신 설></u> | | ⑦ 운영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
| | | 따라 심의・의결한 임원 후보 |
| | | 자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 |
| | | 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 소 |
| | | 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임원 후 |
| | | 보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른 결 |
| | | 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의 |
| | |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
| | |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 |
| | | 시한 문서를 첨부하여 운영위 |
| | | 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 |
| | | <u>다.</u> |
| <u>⑦</u> (생 략) | |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